

## 1. 개정이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고,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제5조)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 나.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제14조)  
구명조끼의 대체수단으로 명시되어있는 구명슈트에 대해,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삭제함
- 다.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제한적으로 원거리활동을 허용하도록 단서

- 조항이 추가되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선박의 제원·동행  
요건 및 선단 구성 기준 등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
- 라.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9조의2 신설)
-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운항 신청서  
및 임시운항허가서 등 서식을 정하고, 허가 신청시 필요한 장비를 규정
- 마.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 마련(제43조의2, 별표 15 신설)
- 법률의 개정으로 블롭점프 등을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에 의한 조문 신설(제43조의2)과 준  
수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별표 15)
- 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 등록 기준 마련(별표 10)
- 블롭점프·워터파크의 사업등록을 위한 기구 설치기준, 인명구조요원  
배치 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 각 호의 안전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명슈트를 포함하며 서프보드”를 “서프보드”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동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동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거리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야 한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이 선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

가.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 포함)

나. 선단 내 수상레저기구 간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3. 제2호에 따라 운항을 하는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중 동력 수상레저기구 간 거리는 500미터 이내, 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 거리는 200미터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임시운항허가 등)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인원 수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2. 소화기 1개 이상
3.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 포함)

②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임시운항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임시운항 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임시운항허가증은 별지 제34호의4서식과 같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9의2에 해당하는”을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지켜야 하

는 준수사항은 별표15와 같다.

별표 10 제1호 수상레저기구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에 대한 등록기준은 제3호와 같다.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의 구멍조끼의 내용란 기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의 안전모의 내용란 기호(-)기호(·)부터 기호(·)까지 외의 부분 중 “(블록점프)”를 “(블롭점프)”로 하며, 같은 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이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다.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블롭점프 및 워터파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 외의 인명구조요원을 기구에 각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워터파크의 경우 면적 660m<sup>2</sup> 당 1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별표 10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항목	내용
블롭점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프대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li> <li>- 에어매트(점프대 아래에 설치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를 말한다)는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하고, 로프 등은 에어매트 밑으로 설치해야 한다.</li> <li>- 에어매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주변 수심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면에 떨어지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에어매트를 중심으로 정면 5미터 이상, 좌우 3미터 이상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그 경계에 부표 등을 설치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점프대와 에어매트는 2미터 이상 겹쳐서 설치해야 한다.</li> <li>-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착장 정면부 등에 설치해서는 안된다.</li> </ul>
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심 1미터 이상 수역에 설치해야 한다.</li> <li>- 워터파크 주변, 익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도보이동이 가능한 설비(푼툰 등)를 설치해야 한다.</li> <li>- 워터파크와 도보이동용 설비(푼툰 등)간 1미터 이상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li> <li>- 워터파크 높이는 수면상에서 최대 6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li> <li>-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착장 정면부 등에 설치해서는 안된다.</li> </ul>

별표 13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사. 법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1조 제6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구분	사업자 준수사항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롭점프)	<p>가. 에어매트 공기주입과 걸 재질상태,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p> <p>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날아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p> <p>다.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날아가는 사람의 몸 무게 차이는 60kg 이내로 하며, 청소년은 20kg 이내로 한다.</p> <p>라. 점프대 위와 아래 각각 1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점프대 아래의 인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다.</p> <p>마. 기구 이용자가 인명안전장비(구명동의,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p> <p>바. 주간에만, 관리자 감독하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p>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상레저 기구제원	종류	기구명	톤 수			
	재질	정원	활동자 수			
신고사항	출항	일시	장소		주 활동지	
	입항예정	일시	장소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b>※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 ① 또는 ② 추가 기재</b>					
	① 안전관리 선박	선명(톤수)	항해구역	운항자 성명(전화번호)		
② 선단의 구성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신기기 [유 / 무],		▪무전기 구비여부 [유 / 무]			
	선명	선장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의 원거리 출항 시에는 안전관리 선박 및 선단의 구성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 선단의 구성의 경우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폰 포함)와 무전기 두 가지 모두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생략)

<신설>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지정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동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동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거리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야 한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2

<신 설>

대 이상이 선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구비하  
는 경우

가.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  
는 통신기기(휴대전화 포  
함)

나. 선단 내 수상레저기구 간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3. 제2호에 따라 운항을 하는 등  
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거리  
는 500미터 이내, 무동력수상  
레저기구 간 거리는 200미터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제29조의2(임시운항허가 등)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승선인원 수에 해당하는 구  
명조끼

2. 소화기 1개 이상

3.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 포함)

②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  
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신 설>

제43조의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  
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  
수사항)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  
레저기구 운영 사업자와 그 종  
사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별표15와 같다.